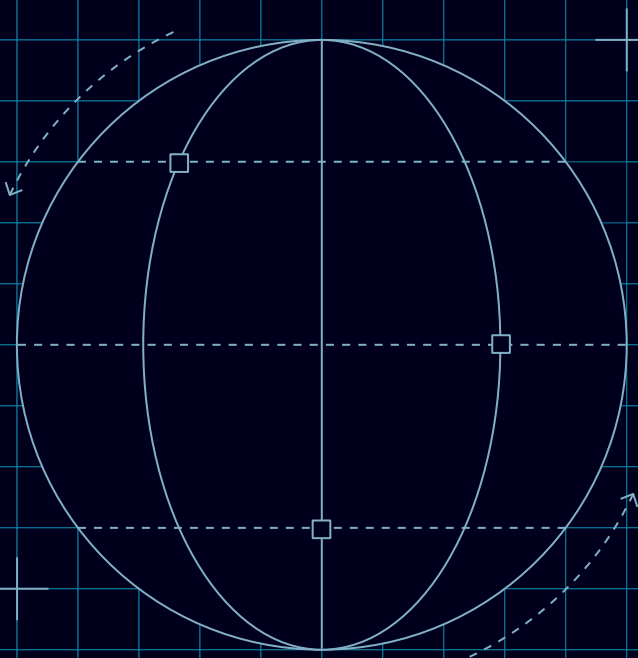


기아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엑기스**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편



대리점법상 금지행위의 유형



구입강제

(법 제6조)
구입의사 없는 상품 등의
구입강제

경제적이익 제공 강요

(법 제7조)
금전 요구 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 전가
등을 통한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법 제8조)
판매목표 제시 후
달성 강제

불이익 제공

(법 제9조)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경영활동 간섭

(법 제10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의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기피

(법 제11조)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에 대한 정당한 확인요청 거부

보복조치

(법 제12조)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거래정지 등
불이익 조치

* 자율준수 가이드 152~161쪽



위반 시 제재 조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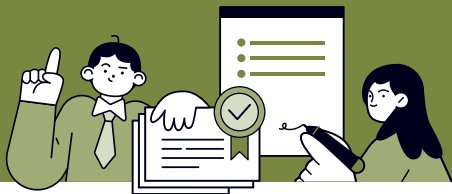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5억 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자율준수 가이드 161~162쪽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 자율준수 가이드 152쪽

대리점법 DO & DON'T

DO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대리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정책 및 지원금(장려금 제도 및 각종 프로모션 등), 영업전략, 예상매출액, 판촉활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DON'T

거래상대방과의 사전 합의 없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관련 업계의 관행에 대한 점검 없이 평소와 다른 계약조건이나 가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사업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거래관계의 종결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대리점 거래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

* 자율준수 가이드 163~164쪽

가맹사업법상 주요 유의사항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법 제6조의2, 제7조)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법 제9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은폐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법 제12조)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등
행위 금지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법 제12조의2)
점포 노후화,
위생·안전상 문제 외
점포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법 제12조의3)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히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법 제12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지역 내 직영점,
가맹점 설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법 제12조의5)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공급거절 등
불이익 조치 금지

광고·판촉행사 실시, 집행내역 통보

(법 제12조의6)
가맹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자 등의 징구

가맹계약 갱신, 해지 제한

(법 제13조, 제14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 금지 및
절차에 따른 계약해지

* 자율준수 가이드 173~178쪽



위반 시 제재 조치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관련매출액에 2%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 또는 5억 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맹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Q. 가맹계약은 언제까지 갱신이 가능한가요?

- 전체 가맹계약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 90일)하는 경우 가맹금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선 안 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

Q. 가맹점 계약 위반 시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계약해지 시 아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 제14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 계약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 자율준수 가이드 177~178쪽

가맹사업법 DO & DON'T

DO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않고 권유하는 경우에도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

원재료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ON'T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변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법 제12조의3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을 해서는 안 된다(법 제13조 제1항).

* 자율준수 가이드 183쪽

자율준수 가이드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준법경영 지원시스템



기아는 윤리·준법 경영 확산을 위해
준법경영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준수 가이드뿐 아니라 뉴스레터,
그 밖의 가이드라인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경로

- ▶ Autoway 접속 ▶ 좌측 상단 버튼 클릭
- ▶ “업무 Tools” 중 “업무시스템” 클릭
- ▶ 업무시스템 페이지에서 “준법” 검색
- ▶ 준법경영지원시스템 접속

기아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를 소개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운영책임자로, CP 계획 수립과 운영(교육, 점검, 평가 등),
최고경영층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2024년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준법지원인인
이우상 준법지원팀장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자율준수(CP) 전담부서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로,
준법지원팀입니다.

자율준수 전담부서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무 운영
 - √ CP 관리체계 운영
 - √ CP 문화 확산 및 교육
 - √ 사전감시제도 운영
 - √ CP 운영 효과성 평가
-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및 관련 부문 지원